

뉴미디어 시대 표현의 자유와 한계

정 윤 식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 서 언

표현의 자유는 정보원에 대한 취재(수집과정), 편집·편성(처리, 가공과정), 보도, 방송(전달과정)에 걸쳐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정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지만(송신자의 자유), 오늘날 정보통신과 뉴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적극적인 수신자의 인격권 보호와 알 권리까지 내포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론의 형성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거대한 언론의 전파력과 언론기관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리적인 언론기업의 막강한 위세와 편견에 의하여 부당히 침해되고 노출될 경우에는 개인의 권익을 신속, 적절히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또한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¹⁾

일반적으로 헌법적으로 보장된 송신자의 언론, 표현의 자유 보장의 구체적 실천수단으로서 보도의 자유는 언론,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부여 받고 있다. 그러나 취재의 자유는 넓은 의미에서 보도의 자유의 일부이지만 제한적 규제를 받고 있다. 기자의 정보 수집권이 논리적으로는 언론의 자유에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당연한 특권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국의 판례와 이론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²⁾ 그 중에서도 취재(수집과정)의 자유보장은 판례, 학설, 조례제정, 법률 등을 통해 정착되어 왔다.³⁾ 최근에는 취재방법을 둘러싸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취재의 자유가 충돌되는 경우가 미국의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과 취재의 자유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재판보도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특히 방송취재, 보도의 한 수단인 카메라 촬영이나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헌법 109 조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라디오, TV 그리고 뉴미디어 방송(Cable TV, 위성방송)을 차별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할 경우 헌법이 규정한 재판공개 원칙이 충분히 보장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신자의 자유와 관련하여 컴퓨터 통신을 비롯한 뉴미디어의 발달은 정보의 집중, 지배, 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컴퓨터에 의한 정보관리는 합리성, 효율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정보의 누설이나 다른 목적에 쉽게 이용될 수 있어 적절한 관리와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⁴⁾ 특히 개인정보의 컴퓨터 처리에 관해서는 ①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인 본인이 거의 알 수 없는 부분에서, 그리고 광범하고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 ②개인정보의 부분적 이용보다는 개인정보가 신속히 유출되어 상호 합치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잘못된 예단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점 ③정보가 잘못 입력되면 그 발견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용될 경우 데이터주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④네트워크화의 진전과 함께 단말기로부터의 원격조정이 가능해져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정보의 부당한 이용, 가공 등이 행해질 우려가 있는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⁵⁾ 전기통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레인 PC 통신 네트워크에서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흘려 보내는 등 그 악용이 문제가 된다. 컴퓨터 통신서비스가 1 대 1의 동시적인 대화라는 전통적인 통신의 이용형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악세스를 상정한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가 실현되자 그 내용에 대한 규제문제가 어렵게 된다.⁶⁾ 이러한 통신서비스에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이나 외설적인 통신을 내보내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통신으로 전송된 정보에 대해서도 표현내용 일반에 부과되고 있는 법 규율이 적용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어느 국가든 통신의 비밀 및 검열금지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규제는 그 실효성도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송신자의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취재방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과 공정한 재판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수신자의 자유측면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컴퓨터 통신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는 전자 게시판과 음란 외설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취재의 자유와 한계

1. 취재활동에 관한 최근의 논쟁

1997년 1월 2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 연방법원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슈퍼체인점의 비위생적인 식품관리실태를 폭로한 미 ABC 방송국에 5백 50만 달러(약 4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슈퍼체인점에 지불할 것을 판결함에 따라 소위 언론의 탐사보도(Investigative Reporting)가 쟁점이 되고 있다. ABC 방송은 1992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방영된 "Primetime Live"라는 보도프로그램에서 미국 내 14개 주에 110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푸드라이온사가 변질된 고기와 생선 및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당시 ABC 방송의 2명의 프로듀서는 푸드라이온에 육류관리담당자와 점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이 회사가 상한 고기와 쥐가 파먹은 치즈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푸드라이온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ABC를 고발하지 않고 대신 '사기'(제작진이 자사의 한 점포에 위장취업하기 위해 가짜 이력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사를 속였다고 주장)와 '무단침입죄'로 고소했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언론기관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공의 복리와 이해를 위해 추적보도의 영역을 개척해온 자유언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정부비리와 악덕 기업에 대한 자유언론의 보도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을 지지하는 측은 "경찰도 마음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언론만이 허용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⁷⁾

이외에도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법정이 잇달아 언론기관의 취재방법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다. 보도내용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비교적 흔했으나 취재방법 즉 몰래카메라의 사용이나 기자가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정보원에 접근하는 비밀취재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일본에서도 취재를 위해서 타인의 주거나 거소 안으로 침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타인의 주거를 함부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어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런 행위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취재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취재대상자에 대한 집요한 감시·미행 등이 있는데 이러한 취재활동이 취재대상자에게 현저한 불쾌감, 압박감, 위압감을 주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이나 게재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취재대상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같은 것을 강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사건을 당한 피해자나 그 가족을 붙들고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강제로 인터뷰를 기도하는 행위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볼 수 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더라도 주거 밖에서 망원렌즈나 전자장치로 촬영하거나 도청할 경우에도 프라이버시 침해로서 당연히 법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촬영·취재·보도가 프라이버시 권리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신분, 목적을 숨긴 이유, 취재내용의 사적 성격의 정도, 공표됨으로 인한 불이익과 공표의 필요성, 기사내용의 정확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취재방법 그 자체도 위법성 판단의 요소라는 견해이다.⁸⁾ 물론 매복 저널리즘은 사회윤리와 인격모독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취재활동은 종종 취재대상자가 숨기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 행위이다.

(내용누락)

최고재판소 사무국과 보도기관(창구는 일본신문협회)과 협의한 법정내 카메라취재의 표준적인 운용기준(1991. 1. 1)에 따르면 촬영시간(개정신고 전 2분 이내), 촬영위치(방청석 뒤), 촬영대상(재판관석과 당사자석)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⁹⁾ 재판소 측은 "①신문기자나 방청인을 넣어 취재의 자유에 응함으로써 재판공개 원칙을 다하고 있다. ②과도한 취재나 촬영으로 피고나 증인에 심리적 영향을 주면 사실의 발견이나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 어렵다. ③피고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도 측은 "①재판공개 원칙은 기사 뿐만 아니라 카메라에도 해당되어야 한다. ②촬영기재의 진보로 조명 없이 조용한 촬영이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를 줄 일은 없다. ③텔레비전보도는 재판의 관심을 높여 준법정신을 높인다. ④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재판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대법원규칙인 법정에서의 방청,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실상 재판에 있어서는 심리전에 잠시 촬영 등을 허가할 뿐 심리의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전자미디어에 의한 취재 보도는 허가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다. 특히 공공성이 높은 재판의 경우는 카메라취재를 허용하는 것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법원과 방송보도기관이 협의하여 법정내 카메라촬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III.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뉴미디어시대라는 새로운 상황에 있어서 정보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정비가 전세계적으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문제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보호를 둘러싼 문제라 하겠다. 1970년대부터 구미제국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가 시작되었는데 1973년에 스웨덴이 데이터법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에서는 1974년에 프라이버시법이, 독일에서는 1977년에 연방데이터보호법, 프랑스에서는 1978년에 데이터처리법, 영국에서는 1984년에 데이터보호법이 만들어졌다.

대외적으로는 1980년에 OECD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하고 가맹각국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를 요구했다. 우리나라에도 정부 전산망이 확립되고 정부나 개인의 활동이 컴퓨터 중심의 체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 필요해졌고 정보관리기관의 자세나 대응도 새로워 질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부의 정보공개라는 문제가 대표적인 법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 정부 이후 일련의 개혁입법과 맞물려 1993년에는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1994. 1. 7)되기에 이르렀고 이 법률은 그 동안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 제정 후 1995년 1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¹⁰⁾ 19세기 후반 미국의 선정주의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에 대항하여 워렌(Samuel D. Warren)과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가 제창한 홀로 있을 권리 (Right to be let alone)로서 프라이버시권은 그 후 1960년대 프렛서(William L. Prosser) 교수가 분류한, 침입(Intrusion), 사사의 공개 (Public disclosure of privacy face), 공중의 오인(False light in the public eye) 및 도용(Appropriation)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정착되었고 현대적인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은 자기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적극적, 능동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17 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으로는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 내용의 불가침,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이 포함되며 프라이버시권을 넓게 해석할 경우 헌법 제 17 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뿐만 아니라 주거와 통신의 불가침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¹¹⁾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첫 번째 관심사는 보호의 적용범위이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를 판별하는 기준은 만약 그 정보가 오용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나 불법이용의 가능성을 측정해야 하는 것이다. 전화번호와 일반서적에 기재된 주소 등과 같은 대부분의 일반정보는 프라이버시보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에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신용 및 종교관련 정보는 프라이버시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¹²⁾

독일의 Bavaria 주의 정보조정관인 Konrad Stollither 는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5개 차원으로 분류하고 정보의 분류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유통의 유무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¹³⁾

① 보호차원 A :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정보, 이러한 정보의 이용자는 법적인 저촉을 받지 않게 된다(예 전화번호, 출판된 회원명부 등)

② 보호차원 B : 오용될 경우 개인의 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이러한 정보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이용할 시에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전 동의를 필요할 것이다(예 : 학위, 책이나 제품의 이름, 직업명세, 기업정보, 금융관계정보 등).

③ 보호차원 C : 정보의 오용으로 관련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예 : 부부관계, 종교, 국적, 군사정보, 학교의 기록물, 고용, 수입, 회원정보, 교통위반정보 등)

④ 보호차원 D : 오용으로 개인의 명예나 그의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예 : 건강상태, 망명자정보, 형사재판정보, 전문적인 참고정보, 재정정보, 부채 및 도산정보 등)

⑤ 보호차원 E : 오용으로 개인의 건강이나 생명 혹은 자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예:부모에 관한 세밀한 정보,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정보)

일반적으로 자동정보처리시스템(ADP : Automated Data Processor 또는 EDP : Electronic Data Processor)은 수동식 자료처리시스템 (MDP : Manual Data Processor, 테이프, 디스크, 우편 등)보다 데이터가 오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동정보처리시스템은 소형기계에 다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수동식보다도 더욱 신속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지상이나 위성 혹은 전파 등을 통해 세계 어느 곳이든 모든 단말기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법을 갖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DP에 대한 규제에 보다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컴퓨터로 처리한 ADP 정보 뿐만 아니라 수작업으로 처리한 개인정보에 이르기까지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신용카드 등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자기정보개시청구권이나 청구거부 등에 대한 조치를 담은 법제 및 조례의 제정이 요청된다. 더욱이 개인정보가 한 나라에서 수집되어 위성통신망을 경유하여 전송되고 그것이 다시 3국에서 처리되고 또 다른 제 4국에 저장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일단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섰을 경우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프라이버시보호법과 안전책들이 실효를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 어떤 사법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설사 규제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규제방안이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원래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는 개인의 인격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비롯되었지만 유럽제국에서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정보주권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으로 자국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제국의 이러한 인식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의 정보도 프라이버시보호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럽의 정보보호조치는 국제간 정보의 자유유통을 주장하는 미국과 분쟁을 야기하였고, 이 분쟁이 국제기구로 하여금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촉구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1980년, 1982년, 1985년 잇달아 OECD에서 발표한 국제데이터유통의 원칙들이다. 이 원칙들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수집제한, 목적의 명확화, 이용제한, 안전보호, 공개 개인참가 등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그 국제적 유통에 있어서는 타국에의 배려, 자유유통, 합법적 제한을 상호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각국의 규제법안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원칙은 개인정보의 국내유통 뿐만 아니라 국제유통에도 규범적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① 모집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제한을 두어야 하며 어떤 개인의 데이터도 적법,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의 주체에 알리거나 또는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되어야 한다.

② 데이터 질의 원칙 : 개인데이터는 그 이용목적에 알맞는 것이어야 하며,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③ 목적명확화의 원칙 : 개인데이터가 수집되는 목적은 수집될 때에 확정되지 않으면 안되며, 또 그 후의 데이터의 이용은 본래의 수집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정해야 한다.

④ 이용제한의 원칙 : 개인데이터는 데이터의 대상인 본인의 동의 또는 부당한 액세스, 파괴, 이용, 수집제공 동의 또는 법률의 수권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에 명시된 목적 이외에 제공되거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⑤ 안전보호의 원칙 : 개인데이터는 분실 또는 부당한 액세스, 파괴, 이용, 수정제공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⑥ 공개의 원칙 : 개인데이터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개방침이 정해져야 하며 또 개인데이터의 존재, 성질 및 그 주요한 이용목적, 데이터관리자의 신원, 근무소재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⑦ 개인참가의 원칙 : 개인은 자기에 관한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여부에 대해 데이터관리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일, 자기의 데이터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과도하지 않는 비용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열람하는 일, 그 청구가 거부된 경우는 그 이유를 제시 받는 일, 자기에 관한 데이터에 대해 시비를 가려서 그 데이터를 삭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IV. 컴퓨터 통신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PC 통신이 멀티미디어화 되어 동화상 정보를 전송하고 방송과 같이 불특정다수에게 보도기능과 여론형성 기능을 갖게 된다면 어떠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지난 한국통신 노조사태에서 보듯이 도피 중이던 노조위원장은 PC 통신의 노조 CUG(closed user group) 서비스를 통해 노조원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투쟁방향이나 행동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한국통신은 노조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짓고 관련 서비스를 폐쇄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이나 동호인끼리의 상호 정보를 교환할 목적으로 설치된 PC 통신서비스를 폐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PC 통신에 설치되어 있는 여론광장이나 대화방, 사설 BBS, 전자게시판과 같은 서비스를 보면 욕설과 비방 등 정보의 폭력이 난무하지만 실시간으로 정보가 교환되고 있는 이들 서비스를 심의 및 규제하는 것은 자칫 정보와 통신의 (사전)검열적 성격을 내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유언비어의 유포나 국가의 전복기도에 잘못 쓰여질 때 반사회적 언론기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특히 정치, 사회적 혼란기에 이러한 서비스를 남용하는 것은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요구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¹⁴⁾ 또한 PC 통신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은 인터넷의 사이버폰(cyberporn, cyberpornography 의 약자) 문제이다. 인터넷의 하나인 유즈넷(Usenet)의 영상 중 83.5%는 포르노적이며 컴퓨터망을 통한 오락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 중 하나가 섹스이며, 이는 미국정보통신회사에 따라 연간 100 만 달러를 넘는 소득을 내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라는 것이다. 어린이나 청소년 층이 인터넷을 타고 오는 사이버폰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텔레비전이나 영화와 달리 인터넷은 개별적 요구에 상응하는 상호적 미디어이기 때문에 부모나 주위사람의 지도와 감시 없이 포르노에 접근할 수 있다.¹⁵⁾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96년 2월 통신품위법(Communicatlons Decency Act)을 제정했는데 그 내용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상스럽거나(Indecent) 명백히 모욕적인(patently offensive) 내용의 표현물을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1996년 6월 연방법원 특별부는 컴퓨터통신상의 음란물을 규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에 제동을 걸었다. 통신품위법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파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방송을 규제해 온 정부의 논리가 전송망을 이용하는 컴퓨터통신에는 적용될 수 없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부의 규제가 헌법상 허용되기 위해서 정부는 그 절실한 필요성을 입증하고 정부의 규제 방법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선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통신품위법이 금지한 상스럽고 명백하게 모욕적인 표현물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컴퓨터통신은 정부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러한 혼란은 컴퓨터통신이 가져온 혁명적 성과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작용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사소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통신품위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컴퓨터통신의 가장 큰 장점인 다수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연방법원의 판결은 컴퓨터통신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일단 막긴 하였으나 대신 정보통신기업들의 자체검열을 강화시키고 있다.¹⁶⁾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PC 통신의 자유와 규제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1. 명확한 규제, 최소한의 규제, 유연한 규제

현재 각종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내용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률조항은 "미성년자보호법",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형법에서는 음란한 문서나 물건을 제조, 소지하는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문서나 음란 비디오물을 배포하는 경우에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은 불건전한 정보나 불온통신을 단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규정을 두고 있다.

1991년 8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 이용자가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 법은 범죄행위나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통신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 53조 2항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대부분의 정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하여 적절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3년 12월에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조) 다시 말해 공개적인 대화는 통신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원칙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다.¹⁷⁾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2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구성조항을 따로 마련하고 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1)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엄성 또는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2)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안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3)청소년의 건전한 품성과 정서 그리고 덕성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4)개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 (5)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표현, 퇴폐적 행위의 적나라한 묘사 및 잔인한 폭력 내용 등이다.

이러한 심의기준은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한 규정이어서 심의위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심의결과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통신의 자유보장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다.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는 명확한 규제, 최소한의 규제, 유연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그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뉴미디어 시대에서는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매체소유의 다양화는 미디어산업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자유롭고도 포괄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뉴미디어방송(케이블 TV, 위성방송)과 신생매체(전광판, PC 통신, VOD, CD-ROM, 유료방송, Internet)들은 수신자의 다양한 언론의 개방과 확대라는 취지에서도 보호·육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뉴미디어방송 또는 신생매체라고 해서 언론·표현의 자유에 수반하는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기술의 발전과 융합이유도하는 정보고속도로와 멀티미디어 전략, WTO 질서에 대처하기 위한 경쟁과 경영다각화 전략의 부응, 신생매체로서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산업적 배려를 감안하더라도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미디어정책이 입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명백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뉴미디어 방송과 신생매체의 특성 및 규제완화라는 정책적 명분만으로 자유로운 활동의 장을 내준다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요청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매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의 원리를 인정하더라도 기본적인 전제로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내용의 균형성과다양성 유지라는 매체철학의 보편적 규범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뉴미디어 방송이나 신생매체에 대해 방송에 상당하는 내용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기존의 미디어와 조직체는 오랜 역사적 경험, 수신자에 대한 신뢰의 확보, 보편적 서비스의 구현 등 공적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뉴미디어와 신생매체는 상대적으로 기존 매체시장에로의 진입을 위해 상업적 서비스에 소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PC 통신의 경우 다수의 가입자들이 세련되지 못한 정보를 전달할 수 밖에

없는 비 전문가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방송→ 뉴미디어방송→ 비디오·영상→ CD-ROM→ 정보통신의 순으로 그 심의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미디어의 특성에 구분 없이 동일한 규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미디어마다의 '회소성'과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규율요소의 정도에 따라서 규제 정도를 변화시킨다는 사고방식이 미디어정책 상에서도 선진제국에서는 채용되고 있다.

'전형적인 방송의 개념 및 현행 방송제도'를 한쪽 끝에 두고 '전형적인 전기통신의 개념 및 현행전기통신제도'를 다른 쪽 끝에 두어 그 양단을 연결한 선상에 여러 뉴미디어를 배치하여 각 미디어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를 분석하여 심의하는 것이다.

2. 자율규제의 원칙

뉴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수많은 뉴미디어와 컴퓨터통신 내용을 심의 기구에서 일일이 감시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효율성 있는 방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비디오텍스는 일본비디오텍스 통신서비스 정보제공자협회에서 윤리강령을 정하여 자율적인 심사를 하고 있고, 또한 다이얼 Q2(우리나라 700 번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단체인 일본전화서비스협회 안에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윤리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네트워크에서는 회원규약으로 불온한 내용의 정보는 네트워크의 관리자가 삭제하는 외에 이용정지, 회원계약 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조직임을 고려하면 계약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 표현을 관리자가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흘려 보낸 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¹⁸⁾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단체나 협회의 구성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에서도 하이텔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자사의 PC 통신 내용이 비윤리적인 경우 ID를 박탈하고 있다. 다만 각 통신사업체나 협회에서 심의한 통신내용이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내용을 재심의하여 제재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일부 유형의 통신내용(음란 외설)은 전기통신사업체의 자율심의 보다는 이용자 단체 등에 심의를 일임하되, 그 중 이용자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문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요약컨대 모든 정보통신 내용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 아니라 단위 전기통신사업체나 협회의 자율심으로 대체하고,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의방안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그 파급효과나 사회적 영향력, 시장규모 등 다양한 요건이 파악되어 일정한 규제와 방안이 정립될 때까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PC 통신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고 그 파급효과의 예측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심의행정의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며, 자율심이라 할지라도 심의제재의 최종판단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3. 사전심의 문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구영화법 12 조 1 항 및 13 조(사전심의 없이 상영, 배포할 수 없다)에 대해 제기한 위헌 제청에서 '공론의 심의 제도는 사실상의 사전검열제도로 언론 출판의 사전검열을 금지 하고 있는 헌법 21 조 2 항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 구영화법과 현행 영화진흥법상의 사전심의 관련 조항은 완전히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현재는 결정 문에서 '공론의 심의는 영화의 내용을 사전 심사하고 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영화는 상영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한다'며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에 부적합할 경우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밝혀 등급제 심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 비디오, CD 타이틀 등의 소프트웨어 산업계도 사전심의 규제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공론의 새영상물 사전심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상소프트웨어는 창의력이 가장 중시 되는 분야인 만큼 사전심의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¹⁹⁾ 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1995년 12월 6일 법개정 때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조항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

또 공보처는 입법 예고한 통합방송법에서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사후적으로 광고방송중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청소년 보호 법률안)을 입법, 추진하면서 만화의 사전심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나 창작자들은 사전심의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사전심의제의 경우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심의제를 법리적 차원에서만 해석해서는 아니되고 그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 대외개방의 범위와 속도, 경제적 파급효과, 아동·청소년 보호, 폭력·음란물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실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사전심의제의 존치 및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만 CD-ROM 과 정보통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영상물은 사후심의제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신생매체의 보호 육성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현단계로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PC 통신의 전자게시판, 인터넷 서비스 등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및 사전심의제를 인정하되, 그 외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문자, 영상물 모두 사후심의제가 바람직하다.

V. 결 어

1. 송신자와 수신자의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억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것이 정치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이었다. 표현의 자유는 권력으로부터 자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력에 대한 자유이기도 하다.

정보는 권력의 중요한 요소이고 따라서 누가 사회의 정보공간에서 정보=표현의 주도권을 쥐는가가 정치과정에서 관건을 차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는 자유론의 차원에서도 논의할 수도 있고, 권력론의 차원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권력투쟁의 성격을 떨 수 밖에 없다. 뉴미디어 시대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권력투쟁은 국가, 송신자(언론기관, 뉴미디어 사업체), 수신자(시민) 간의 관계설정 및 역할 구조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수신자(시민) 입장에 입각한 표현의 자유법제로서는 인격권보호(명예훼손·프라이버시 보호), 반론권, 본고에서 논의한 취재방법에 대한 제한, 공정한 재판의 문제가 그 전형적인 사례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신자의 자유 및 보호조치는 송신자의 자유(취재·보도·편집)를 침해하고, 자유롭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언론·표현의 자유의 본래 목적을 손상할 우려 또한 있는 것이다. 송신자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디어 법제로서는 미디어 산업의 구조규제 완화(진입규제 완화 : 방송·통신사업의 민영화, 미디어 상호 소유권완화·신문·방송의 상호 소유, 방송과 통신사업의 상호 소유 등), 내용규제 완화(형평의 원칙 폐지, 음란·외설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한 미국의 판례 등), 심의상의 자율규제 등이 있다. 이러한 송신자의 자유법제에는 경제논리가 질게 반영되어 있다.

언론이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로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뉴미디어시대 자본집약적인 첨단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도 경제적인 토대는 확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경제논리의 강조는 표현내용을 상업화, 저질·통속화를 야기시킨다는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고 있다. 결국 뉴미디어시대 도래에 따라 경제논리에 입각한 송신자의 자유는 동시에 그 견제 권력과 수단으로서 수신자의 보호 및 자유를 강화하는 법제로 이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미디어의 융합과 표현의 자유

뉴미디어시대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것은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융합에서 비롯된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전통적으로 신문은 사기업, 방송과 전기통신은 공영제로 운영되고, 내용규제상 방송매체는 전파의 유한희소성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신문매체 보다는 공적 규제를 강하게 받아왔으며, 통신매체는 헌법상정보유통상의 비밀이 보장되어왔다. 이와 같은 매체간의 차별적인 규제원리는 운영과 규제원리를 분리함으로써 미디어시장에서 상호영역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미디어권력의 균형이 취해진 상태에서 상호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여론형성의 다원화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뉴미디어시대에는 방송과 통신, 그리고 컴퓨터 기술이 음성, 영상, 문자정보를 통합하고 신문,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융합하고 있다. 컴퓨터 디지털 기술로 인해 광케이블의 광대역네트워크에서 대량의 텔레비전 방송을 송신하는가 하면 방송의 디지털화로 지상파의 일부를 다양한 통신서비스로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네트워크 통합). 하나의 단말기가 TV, 컴퓨터, 전화기의 기능을 하고(단말기의 통합), 서비스 상에 있어서도 신문과 통신의 융합서비스(전자신문),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유료방송, PC 통신과 인터넷), 신문과

방송의 융합서비스(문자다중방송) 등이 출현하여 전통적인 신문·방송·통신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추세에 대응하여 사업체 간의 제휴와 합병이 모색되고 있다. 즉 네트워크, 단말기, 서비스, 사업자의 융합이야말로 뉴미디어 산업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뉴미디어 시대는 기존의 미디어 체제를 존속, 발전시켜 유지 해왔던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논리와 법제도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뉴미디어시대 표현의 자유와 그 관계에 관한 논의는 미디어 발전속도, 정보의 대외개방의 속도와 범위 그리고 국가-송신자-수신자 간의 역할변화에 따라 그 논리적 전개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 1) 89 헌마 165 참조.
- 2) 방석호, "정보보호와 언론의 취재, 보도기능 등과의 충돌에 관한 법적 고찰" 「정보화와 정부·언론의 역할」, 한국언론학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심포지엄, 1996. 3. 29, p.90.3)
- 3) 석재선치편, 『현대매스컴법 입문』, 법률문화사, 1993,p.27.
- 4) 하마다 준이찌, 『정보법』, 이문호 옮김, 도서출판 장관, 1995, p.145
- 5) 장부정남, 『프라이버시와 고도정보화사회』, 신구현역, 청림출판, 1995, 머리말.
- 6) 하마다 준이찌, 상계서, pp.137-141.
- 7) 한겨레신문 97. 1. 23 및 KBS, 「해외 방송정보(578 호)1, 97. 1. 20, p.18. 참조.
- 8) 하마다 준이찌, 상계서, p.90.
- 9) 하마다 준이찌, 상계서. PP.175-178 참조.
- 10) 성낙인, "정보공개법 제정의 의미와 검토사항", 나우누리 찬우물, 1996. 7. 12.
- 11) 권 영 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1994, p.455, PP.458-464 참조.
- 12) Transnational Data Reporting Service Inc., 「Transnational Data Report」, 1980, p.17.
- 13) Konrad Stollither,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Security for Data Protection", 「Transnational Data Report」, 1980, pp.9-10.
- 14) 임상원 외, 「뉴미디어 출현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1995, PP.219-220.
- 15) 한국언론연구원, 「멀티미디어」, 1995, PP.417-418.
- 16) 장호순, "정보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보호", 한국언론학회 언론과 사회분과 발표논문, 1996, p.6.
- 17) 임상원 외, 상계서, pp.219-220.
- 18) 하마다 준이찌, 상계서, p.144.
- 19)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뉴미디어저널, 1996. 11, PP.8-10.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동대학원 졸업. 언론학 박사
-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저술 : 특수방송론